

감사위원회 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운영규정은 주식회사 숲(이하 "회사") 감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운영규정) ① 이 운영규정의 제·개정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.

② 이 운영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, 이사회 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2장 권한과 의무

제4조(독립성 및 객관성의 원칙) 위원회는 이사회와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며,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한다.

제5조(권한)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.

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⑦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

⑧ 위원회는 법령, 정관,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6조(의무) ① 위원회 위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의2를 준용한다.

- ②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장 구성

- 제7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한다.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- ②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8조(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및 운영)**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·운영,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제4장 운영

제9조(회의의 종류)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2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긴급한 의안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.

- 제10조(소집권자)** 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1조(소집절차) 위원회를 소집하는 위원은 회의의 개최 시기 및 장소 그리고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일의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제12조(결의방법)** ① 위원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본다.
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의사항과 관계된 임·직원 및 외부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사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부의사항의 내용)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(1)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(상법 제412조의3)
 - (2)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(상법 제413조)
2.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 - (1)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(상법 제391조의2)
 - (2) 감사보고서의 작성·제출(상법 제447조의4)
 - (3)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(상법 제402조)
 - (4)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(상법 제412조)
 - (5)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(상법 제393조의2)
3. 감사에 관한 사항
 - (1)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(상법 제412조)
 - (2) 자회사의 조사(상법 제412조의5)
 - (3) 이사의 보고 수령(상법 제412조의2)
 - (4)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(상법 제394조)
 - (5)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요청 시 소제기 결정여부(상법 제403조, 제394조)
 - (6) 외부감사인 선정 및 변경·해임요청(외부감사법 제10조, 제13조)
 - (7)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, 감사시간,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(외부감사법 제10조)
 - (8)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사후평가
 - (9)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(외부감사법 제22조)
 - (10)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,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(외부감사법 제22조)
 - (11) 감사계획 및 결과
 - (12)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
 - (13) 내부통제제도(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포함)의 평가(외부감사법 제8조)
 - (14)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
 - (15)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명에 대한 동의

제14조(감사록)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한다.
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(감사위원회 활동 시작일자로 수정)부터 시행한다.